

제 호

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

신청인	환전영업자 상호	환전영업자번호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번호
	주소	

은행 확인 사항	환전증명서 있는 경우	위 환전영업자가 당 은행에 미사용 환전증명서(외국환 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) 및 폐기 환전증명서를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
	환전증명서 없는 경우	위 환전영업자가 환전증명서 (미발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소진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)의 사유로 당 은행에 반납한 환전 증명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
※ 해당 선택항목에 체크(√) 표시하기 바랍니다.			
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폐지신고 및 「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9조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과 관련하여 미사용 환전증명서 및 폐기 환전증명서에 대해 당 은행(지정거래외국환은행)에서 위와 같이 확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은행

지점

직인

〇〇세관장 귀하

참고사항

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28조제3항제2호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9조에 따라 환전영업자 폐지신고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환전영업자에게 별지 제 3-2호 서식(본 서식)을 이용하여 환전증명서 반납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.